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으로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이 개정(‘27.1.8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관련 과태료 조항 구체화(안 별표)

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미제출한 시설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 · 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파목 위반행위란 파목 중 “기록·보존”을 “기록·보존·제출”로, “보존한”을 “보존·제출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511